

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여러분께

후생노동성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**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이**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.

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휴직중일 때

● 질병수당금

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이나 상해로 인해 일을 쉬는 경우, 휴직 4일째 이후의 소득을 보장합니다.

● 휴업수당

회사의 책임으로 노동자를 쉬게 한 경우, 회사는 휴직기간 중 해당 직원에게 휴업수당 (평균 임금의 60% 이상) 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● 고용조정정보조금

경제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합니다.

초등학교 임시휴교 등에 따라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경우

● 초등학교 휴교 등에 따른 대응보조금 (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대상)

초등학교 임시휴교 등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「노동자 (보호자)」 (정규고용·비정규고용을 막론한다.) 에 대해 유급 (임금전액지급) 휴가를 인정한 사업주 (노동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제외한다) 에 대해 보조합니다.

● 초등학교 휴교 등에 따른 대응지원금 (위탁을 받아 혼자 일을 하는 사람 대상)

초등학교 임시휴교 등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「위탁을 받아 혼자 일을 하는 사람 (보호자)」 에 대해 비근무일에 대한 지원을 행합니다.

금전적으로 (생활비 혹은 사업자금) 곤란을 겪을 때

● 긴급소액자금·종합지원자금 (생활비)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이나 실직을 한 경우 생활자금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에 한해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
(※)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현재의 추가적인 긴급대응책의 하나로써 공공요금의 지불유예나 국제·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등의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
● 무이자·무담보대출 (사업자금)

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사업 상태가 악화된 개인사업자(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) 등에 대해 무담보·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.

노동문제 (해고·고용해지 등) 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

● 특별노동상담창구 등

각 도·시·부·현 노동국에 「특별노동상담창구」 를 설치했습니다.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해고·고용해지·휴직 수당 등의 노동상담을 행하고 있습니다.

한편 취업이 확정된 학생 중, 내정이 취소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(Hello Work)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